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011
----------	-----

제출년월일 : 2003. 7. 1.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노소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탁노소설치·운영 및 설치 우선지역(안 제2조, 제6조).
- 시설 설치구조, 설비기준설정(안 제4조).
- 탁노소운영에 따른 임무한계 설정(안 제5조).
- 탁노소설치·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마련(안 제8조).
- 수익자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안 제9조).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 등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라 목 및 동법 제15조, 제35조제1항제7호
※ 관련공문 : 사회65246-10046(1999.02.08) 및 사회65240-10515(2002.02.26)호
- 입법예고 : 고성군공고 제2003-197호(2003.5.19~2003.6.9), 특기할 사항없음

4. 본 문

- 불임과 같음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의 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탁노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탁노소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4천명이상 면지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자원봉사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것
4.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할 것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 또는 사회복지사를 두며, 시설장은 군수 또는 책임자원봉사자가 되고,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

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 및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65세이상 보훈가족·장애인·맞벌이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운영시간 등)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되 그 운영시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지역 시설의 여건 및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시설소재지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1회 협의회 회의개최
2. 비용수납금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검토

제9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 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는다.

③비용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영비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간호사, 간호조무
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에 의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안)

의 안	811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7.10

제 출 자 : 총무위원회

1. 수정사유

- 고성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시설은 읍·면장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운영 가능 (안 제3조)
- 시설장은 관할 읍·면장이나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됨.(안 제5조)
- 탁노소 운영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8조)
-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2조)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3조)
- 위탁의 취소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4조)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탁노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의 무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탁노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탁노소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탁노소(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 읍지역 또는 인구 4천명이상 면지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설치·운영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장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것
4.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할 것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 또는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은 관할읍·면장이 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되며, 다수의 무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 및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 보훈가족·장애인·맞벌이가정 노인
4. 65세이상 일반노인

제7조(운영시간 등)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되 그 운영시간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지역 시설의 여건 및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시설소재지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자나 이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는 연2회(상·하반기) 회의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금액에 관한 심의
3.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9조(비용의 수납) ①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수납 금액의 결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는다.

③ 비용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영비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1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에 의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수 정
제2조(탁노소의 설치) ----- ----- <u>1개소이상 설치 · 운영하고, -----.</u>	제2조(탁노소의 설치) ----- ----- <u>설치 · 운영하고, -----.</u>
제3조(설치 · 운영주체) ----- , <u>책임자원봉사자에게 위임하여</u> <u>운영할 수 있다.</u>	제3조(설치 · 운영주체) ----- , 읍 · 면장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 <u>두며, --- 교수 또는 책임</u> <u>자원봉사자가 되고, -----.</u>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 ①----- ----- <u>둘수 있으며, -----</u> 관할 읍 · 면장이 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되며, ----- .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 3. <u>65세이상 보훈가족 · 장애인 ·</u> <u>맞벌이가정 노인</u>	제6조(입소대상 및 순위) ----- 3. <u>보훈가족 · 장애인 · 맞벌이가정</u> <u>노인</u>
제8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①항 생략 ② ----- <u>10인이내로</u> -- . ③ ----- --- <u>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u> <u>단체에서 선임하며, -----</u>	제8조(탁노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①항 생략 ② ----- <u>20인이내로</u> -- . ③ ----- ---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가진자나 이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

현 행	수 정
(신설) <u>④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매월 1회 협의회 회의개최 2. 비용수납금 심의 3. ----- 사항검토 <u>제11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 -----, 전직간호사, ----- 모집 · 활용 할 수 있다.</u>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p> <p>1. 협의회는 연2회(상 · 하반기)회의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금액에 관한 심의 3. ----- 사항의 심의</p> <p>제11조(자원봉사자모집 및 활용) ① -----, 간호사, ----- 모집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신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수 정
(신설)	<p>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1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제12조(준용규정) -----	제15조(준용규정) -----
제13조(시행규칙) -----	제16조(시행규칙) -----